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한지아 · 우재준 · 안철수
서범수 · 이인선 · 김재섭
김기현 · 서명옥 · 조은희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,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.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.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인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·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국회의원인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·모욕, 부당한 지시·명령, 그 밖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

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25조의2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) ① 의원은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·모욕, 부당한 지시·명령, 그 밖에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·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.

③ 사무총장은 의원 및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운영,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5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) ① 의원은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·모욕, 부당한 지시·명령, 그 밖에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·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.</u> <u>③ 사무총장은 의원 및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</u>

